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14조제5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4조제1항제8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63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6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4.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제4-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102조제1항 후단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1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10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102조의6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집합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제4-103조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영업일”을 각각 “2영업일”로 한다.

제6-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영업일”을 “2영업일”로 한다.

제7-8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영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

8.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제7-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① 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1.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2.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7-29조제3항 전단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한다.

제7-32조제2항 중 “제7-22조 각 호”를 “제7-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7-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41조의2의 제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1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①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정보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나.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다.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 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마.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 바.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나. 주요 투자대상자산
 - 다. 투자구조
 - 라. 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 아.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가. 위험등급 및 위험요소
 - 나.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3.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 ②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영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 ④ 영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자가 영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7-41조의4의 제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요건"으로 한다.

제7-41조의6의 제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 제2항 · 제3항을 각각 제3항 · 제4항 ·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7-41조의6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71조의9제2항제5호"를 "영 제271조의9제3항제5호"로,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7-41조의6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271조의9제5항”을 “영 제271조의9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 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다. 대출의 실행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제7-41조의6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271조의10제6항제4호”를 “영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제7-41조의7의 제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본문 중 “영 제271조의11제2항제3호”를 “영 제271조의11제3항제3호”로 한다.

제7-41조의8의 제목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를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제7-41조의9의 제목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71조의14제1항제2호”를 “영 제271조의14제2항제2호”로 한다.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41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271조의14제5항”를 “영 제271조의14제6항”으로,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영 제271조의14제8항”을 “영 제271조의14제9항”으로 한다.

③ 영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④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4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1조의1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① 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② 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11을 삭제한다.

제7-41조의12를 삭제한다.

제7-4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1조의13(업무집행사원 등) ①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

우

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

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⑧ 영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목적 · 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

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

3. 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⑨ 영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⑩ 영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41조의14의 제목을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1조의21제4항제1호”를 “영 제271조의21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271조의21제7항”을 “영 제271조의21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271조의21제8항”을 “영 제271조의21제12항”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① 영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7-41조의15의 제목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으로 한다.

제7-4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43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1호 마목 전문인력의 종류란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목 비고 제2호 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비고 제2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별표 2 제1호 사목 비고 제1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및 바목(5)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별표 4 제2호의 제목, 제4호의 제목, 제5호의 제목 및 같은 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1 <주의사항>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2의2 제1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중 “제16조제9항(또는 제271조의2제8항)”을 “제16조제10항(또는 제271조의2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6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7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8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9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10호

첨부서류 제4호, 별지 제12호 첨부서류 제1호, 별지 제13호 첨부서류란 [금융투자업자의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의 <예비인가> 제3호, 별지 제15호 첨부서류 제3호, 별지 제20호 첨부서류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7~41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등록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투자성 상품(연계투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1)부터 6)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13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제2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4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5)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4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9조제5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의4 표1 제1호의 구분란 제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가목·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제7-41조의14 관련)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 비고

-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별지 제3호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변경보고서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사원명 (상호 · 본점의 명칭)	본점소재지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의 목적은 현금·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등기·상근 여부	담당 업무	운용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2.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
 3. 등기·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
 4.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금융회사인 경우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다.
 3. 목적사업,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4. 대주주 내역에 관한 사항

성명(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지분율(%)	회사와의 관계

기재상의 주의

-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 첨부서류

4-1. 대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증빙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비율
		종류	수량 (주)	주당 액면가액(원)	주당 발행가액(원)			

기재상의 주의

-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연도	제×1기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비고

기재상의 주의

-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첨부서류

6-1. 운용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7. 보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8-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9-1.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2.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9-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9-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9-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규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생 략) ②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대주주가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 ④ (생 략)	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4조(출자승인 등) ① ~ ④ (생 략)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4.26) 제2조제1	제2-14조(출자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 4. (생략)

⑥ · ⑦ (생략)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1.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① 제3-11조 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3-14조(차감항목) ①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8.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u>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u> -- -----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4-20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u>	< 삭제 >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 -----

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3의2. 별표 2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한다)이 아닌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4. (생략)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

(생략)

②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1.~3. (현행과 같음)

3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4. (현행과 같음)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

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

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신 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4-9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

4.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9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 제10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

3. (생략)

4. "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가.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3. (현행과 같음)

4.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

5. "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용자금, 전담신용거래용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①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전문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lines (solid top and bottom lines with a dashed middle line).

5. _____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1) _____

- 일 반 -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용자"는 "투자자재산담보용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② (생략)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 2. (생략)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② (현행과 같음)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재무상태표-----

-----.

1. · 2. (현행과 같음)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 -----

-----.

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생 략)

제4-102조의6(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가. (생 략)
-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

1.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② (현행과 같음)

제4-102조의6(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

-----.

1.~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

기구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제4-6조제4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라. · 마. (생 략)

5.~7. (생 략)

제4-103조(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 ② (생 략)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

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

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라. · 마. (현행과 같음)

5.~7. (현행과 같음)

제4-103조(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

-----.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2영업일

1. ~ 3. (현행과 같음)

④

1. · 2. (현행과 같음)

3.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 ~ 8. (생 략)

⑤ · ⑥ (생 략)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영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

- 2영업일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

2영업일-----

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이 영 제2조제7호의 고난
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

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
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
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
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
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
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법 제249조의7제2항제4
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9조제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

8.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 설>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① 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 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신 설>

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 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1.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2.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

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에 해당

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

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설정 또는 설립) ① · ②
(생략)

③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
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금등
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
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
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
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설정 또는 설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영업일-----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36조의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때 등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4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영 제271조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22조제1항 각 호-----

-----.
-----.

제7-36조의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

-----.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1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

의2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 회사인 경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1. ~ 4. (현행과 같음)

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생 략)

제7-41조의3(투자광고 매체 등)

영 제271조의6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41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①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정보

-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나.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다.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 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마.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 바.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나. 주요 투자대상자산
- 다. 투자구조
- 라. 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아.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항

3.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가. 위험도 및 위험요소

나.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

방안

4.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
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④ 영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
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
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
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일반투자를 대상으로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영 제27

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⑥ 법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
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
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
는 매체를 말한다.

제7-41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요건) 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 억 원"을 말한다.

제7-4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신 설>

제7-41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요건) (현행과 같음)

제7-41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①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 설>

① 영 제271조의9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영 제271조의9제3항제5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영 제271조의9제5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④ 영 제271조의9제6항-----

-----.

⑤ 법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⑥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
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
축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
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
나 등록을 한 자일 것
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
지
다. 대출의 실행

<신 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
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⑧ 영 제271조의10제6항제4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④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71조의10제7항에 따른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1조의10제9항에 따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⑨ 영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제7-4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271조의11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7-41조의8(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7-41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271조의11제3항제3호-----

제7-41조의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

1. · 2. (현행과 같음)

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
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
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
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
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
다)]

③ · ④ (생략)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9(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신

②

1. (현행과 같음)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_____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7-41조의9(기관전용 사모집합

설>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71조의14제2항제2호-----

-----.

③ 영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④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

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71조의14제5항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8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1조의1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방법)

① 영 제271조의15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

⑤ 영 제271조의14제6항-----100분의 30 이상----------.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9항-----.

제7-41조의1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① 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②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15제3항제1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② 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7-41조의11(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 ① 영 제271조의17제
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
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
참여 등 법 제249조의12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
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1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
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
우

② 영 제271조의17제4항제3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삭 제>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71조의17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

에 따라 지분증권등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영 제271조의17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당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영 제271조의17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1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① 영 제271조의18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삭 제>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
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법 제249조의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
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
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조제3항 단
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
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
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의 내용에 흠
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
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은 심
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1조의13(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영 제271조의19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각각의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71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등을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중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제7-41조의11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217조의19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제7-41조의13(업무집행사원 등)
①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
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까지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제7-41조의11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 ③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 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 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
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 제271조의20제2항제5호
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
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
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
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
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
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
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
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
이 폐지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
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
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마.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
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
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
유하는 경우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
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
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
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
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
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 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
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⑧ 영 제271조의20제3항제2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목적 · 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
목적에 부합할 것

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
할 것

3. 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
의 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
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
할 것

⑨ 영 제271조의 20제4항제6호
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
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⑩ 영 제271조의 20제4항제7호
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절차 등) <신 설>

① 영 제271조의21제4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2. (생략)

② 영 제271조의21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영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영 제271조의21제5항제1호-----

-----.

1. ~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1조의21제8항-----

-----.

④ 영 제271조의21제1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7-41조의1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1조의16(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43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 6. (생 략)

7.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제7-41조의1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

-----.

제7-41조의16(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사모집합투자기구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사모집합투자기구 -----

-----.

③ (현행과 같음)

제8-43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

1. ~ 6. (현행과 같음)

7.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
우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
증을 포함한다)

8. (생 賦)

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

8. (현행과 같음)